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차량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요율을 사용빈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고,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유사한 가로판매대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의 일률부과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면수 등을 기준으로 적용요율을 차등화 함(안 별표1의 제4호)

(현행)

• 차량진·출입로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개정안)

-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인 진·출입로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진·출입로
----- 토지가격에 0.020를 곱한 금액

나.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정비 되어 있지 않은 문구(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함(안 제2조)

(현행)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안)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다. 생활정보지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를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시킴(안 별표1의 제7호)

- 생활정보지배포대가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도시미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효율적인 도로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라.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유사한 가로판매대 점용료 산정 기준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1의 제7호)

-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년에 점용면적 1㎡당 토지 가격에 0.02(종전 0.05)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등으로 정리하여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함.

3. 개정근거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2008.9.30조례 제4672호(개정)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8. 12. 11. ~ 2008. 12. 31)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9. 1. 6)

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동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영 제24조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8조제5항 제9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8조에 따라”로 하고,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4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1에 의하여”를 “별표1에 따라”로 하고, “조정산식에 의하여”를 “조정산식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부령”을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을 “제2호에 해당되는”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을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하는”을 “해당되는”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8호에서 규정한”을 “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4조에 따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56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부령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

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1의 제4호 중 "진·출입로"를 다시 "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및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로 구분하고 점용료를 각각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및 "토지가격에 0.02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1의 제7호 중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로,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를 다시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및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로 구분하고, 점용료를 각각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및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로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같은 법 ----- ----- 같은 법 시행규칙 ----- 에 따라 ----- ----- ----- ----- ----- ----- ----- -----</p>
<p>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u>비스카드판매대</u>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p>3. (생략)</p>	<p>제2조(도로점용허가) ----- ----- 영 제28조제5항 ----- 제9호에 따라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 (현행과 같음)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1조 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 ----- 영 제42조제2항에 ----- 따른 ----- -----</p>

현행	개정안
<p>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p> <p>②~⑤ (생략)</p>	<p>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 ----- 영 제28조에 따라 ----- ----- ----- ----- 법 제94조에 따라 ----- -----.</p> <p>②~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p>	<p>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 ----- ----- 제56조제2항에 따른 ----- ----- -----.</p>
<p>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 ----- ----- 별표1에 따라 ----- ----- ----- ----- ----- ----- 조정산식에 따라 ----- -----.</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생략)</p> <p>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p> <p>2. (생략)</p> <p>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p> <p>4.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p> <p>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p> <p>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p> <p>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p>	<p>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 ----- ----- 「도로법 시행규칙」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 「도로법 시행규칙」 -----</p> <p>4.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p> <p>1. ----- 제2호에 해당되는 -----</p> <p>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p> <p>3. ----- 해당되는 -----</p> <p>③ -----</p> <p>제8호에 따른 -----</p>

현행	개정안
<p>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 3. (생략)</p> <p>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p> <p>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u>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u>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p> <p>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u>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u>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p> <p>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u>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u>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p> <p>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2와 같다.</p>	<p>----- ----- 1.~3. (현행과 같음)</p> <p>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p> <p>① ----- ----- -----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 ----- -----</p> <p>② ----- ----- ----- 법제84조에 따라 ----- ----- -----</p> <p>③ ----- ----- ----- 제56조의2에 따른 ----- -----</p> <p>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 ----- 법 제101조에 따른 ----- ----- -----</p>

현행	개정안
<p>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u>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u>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u>부령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u>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7조의 규정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당해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p>	<p>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u>법제38조에 따라</u> ----- -----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 -----.</p> <p>② ----- 제1항에 따른 ----- -----.</p> <p>③ ----- -----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 ----- ----- -----.</p>
<p>제11조(세입구분)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p>	<p>제11조(세입구분)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 ----- ----- -----.</p> <p>② <u>제1항에 따른</u> ----- ----- -----.</p>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현행과 같음)

점용료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공중 전화등 지상시설물	전주거도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850		
	1개	1년	차중대전용기타, 무선전화기자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 대전화기자국, 교동량검지기, 주차측 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폐설 용구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7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토지가각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배설 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산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엔류), 선덕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길이 1m	1년	외경 0.1미터이하	1,150
				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2,400
				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4,850
				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7,250
				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9,650
				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2,100
				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18,100
				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30,150
				외경 3.0미터초과	42,250
				자중형차장차 (어스앵키), 압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길이 1m
	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3,600			
	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7,200			
	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10,850			
	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14,400			
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8,100				

정액					개 정 안							
정액의종류			기준 단위		정액 (단위 : 원)	정액의종류			기준 단위		정액 (단위 : 원)	
			정액단위	기간단위					정액단위	기간단위		
2.수도관 관벽구 등 지하 매설물		외경 1.0미터조과 2.0미터이하	길이 1m	1년	27,100	2.수도관 관벽구 등 지하 매설물		외경 1.0미터조과 2.0미터이하	길이 1m	1년	27,100	
		외경 2.0미터조과 3.0미터이하			45,200			외경 2.0미터조과 3.0미터이하			45,200	
		외경 3.0미터조과			63,250			외경 3.0미터조과			63,250	
3.광고탑·광고판 간판(동굴간판을 포함한다) ·현수막·사선안개 표지·이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 (동굴간판을 제외한 다)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적용)	표시면적 1㎡	1일	400	3.광고탑·광고판 간판(동굴간판을 포함한다) ·현수막·사선안개 표지·이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 (동굴간판을 제외한 다)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적용)	표시면적 1㎡	1일	400	
		기타		1년	122,000			기타		1년	122,000	
	동굴간판	표시면적 1㎡	1년	58,400	동굴간판		표시면적 1㎡	1년	58,400			
	사선안개표지	1개	1년	101,650	사선안개표지		1개	1년	101,6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표시면적 1㎡	1일	40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표시면적 1㎡	1일	400			
	이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244,000		이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244,000	
		기타			122,000			기타			122,000	
4. 주유소 주차장·여객 자동차·타미널 화물·타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 적지장류·계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정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여객 자동차·타미널 화물·타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 적지장류·계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정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정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정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상행로 ·1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정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상행로 ·1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정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현행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6. 지하상 가지하상 붕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층이상인 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각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붕보			토지가각에 0.0075를 곱한 금액
	육교 상가·기타			토지가각에 0.02를 곱한 금액
7.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바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바스카드판매대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각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각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면판매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제조공작부분 기타	일시 점용한 것	점용 면적 1㎡	1일	400
	기 타	1㎡	1년	토지가각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상고차동차주차 장장공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각에 0.02를 곱한 금액
10.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장공고한 골목형 제세시장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등)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각에 0.0001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이화물위탁판매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각에 0.01를 곱한 금액
	주 택			토지가각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각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1. ~ 8. (생략)

개정안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6. 지하상 가지하상 붕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층이상인 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각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붕보			토지가각에 0.0075를 곱한 금액
	육교 상가·기타			토지가각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생활정보지원합 배포대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각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각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각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각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면판매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제조공작부분 기타	일시 점용한 것	점용 면적 1㎡	1일	400
	기 타	1㎡	1년	토지가각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상고차동 차주차장상공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각에 0.02를 곱한 금액
10.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장공고 한 골목형 제세시장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 등)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각에 0.0001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이화물위탁판매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각에 0.01를 곱한 금액
	주 택			토지가각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각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1. ~ 8. (현행과 같음)